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45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55호(2025.9.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의 검사·감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노출배관의 검사수수료는 별표의 중간·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나. 지하배관의 감리수수료는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44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감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감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

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감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고압가스제조시설

(1) 검사수수료는 단위제조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냉동제조시설, 저장설비(사업소내의 모든 저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은 단위제조시설의 구분에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한다.

(2) 제조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

(4) 고압가스충전시설 중 다른 사업소로부터 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저장설비에 저장하고 그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5)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에 설치된 고압가스배관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별표] 제1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관검사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나. 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1) 2이상의 사용처에서 저장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저장능력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관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제조·저장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압설비 이후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압력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 [별표] 제2호의 중간검사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가 2회를 초과하여 중간검사를 희망할 경우 초과 1회당 중간검사 수수료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라.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위

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4) (1) 내지 (3)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5)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성검사 수수료의 1/2 금액을 납부한다.

마. [별표] 제3호의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초저온용기의 검사수수료 산정은 액화산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용기에 있어서 압축가스용기의 검사수수료는 내용적으로 하며 액화가스용기의 검사수수료는 중량으로 산정한다.

바. [별표] 제4호의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압력용기의 열교환기류 수수료는 외형치수에 따른 내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등의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갱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심사비를 납부한다.

(1)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 : 448만원

(2)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 : 598만원

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제조자가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용기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자. 고압제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9. 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수수료는 별표9와 같이 정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신규·변경 시 안전관리규정 심사 수수료의 40%를 납부한다.

10. 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신규검사수수료는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44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검사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 (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1호, 2016. 1.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제10호에 따른 검사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 49만원
2.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 81만원
3. 2018년 7월 1일부터 : 별표 제10호에 의한 금액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17-123호, 2017. 9.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18-226호, 2018. 12. 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19-92호, 2019. 6. 1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23-125호, 2023. 6. 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25-157호, 2025. 9.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26-145호, 2026. 11.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액화가스의제조(충전·저장)시설	5톤이하	18만1천원	14만원
	5톤초과 10톤이하	24만5천원	16만9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30만7천원	19만8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45만1천원	28만4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62만3천원	37만8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104만9천원	68만2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150만원	92만1천원
	1천톤초과	150만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7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29만7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92만1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16만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압축가스의제조(충전·저장)시설	1천㎥이하	21만2천원	15만2천원
	1천㎥초과 2천㎥이하	37만1천원	23만1천원
	2천㎥초과 3천㎥이하	46만6천원	28만2천원
	3천㎥초과 5천㎥이하	54만8천원	34만2천원
	5천㎥초과 1만㎥이하	92만7천원	65만6천원
	1만㎥초과 10만㎥이하	151만9천원	101만7천원
	10만㎥초과 20만㎥이하	202만7천원	170만3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258만2천원	218만2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319만5천원	263만7천원
	100만㎥초과	319만5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6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29만7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263만7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4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00만8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냉 동 능 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냉동제조 시설	5톤이하	5만원	3만4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9만4천원	5만9천원
	10톤초과 30톤이하	17만5천원	10만7천원
	30톤초과 50톤이하	22만9천원	15만4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39만원	25만5천원
	100톤초과 200톤이하	60만4천원	37만1천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73만1천원	47만2천원
	300톤초과 500톤이하	97만5천원	67만9천원
	500톤초과	97만5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81만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67만9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4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47만2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대상			금액	
시설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성검사	정기검사
배관		연장 1㎞이하	20만9천원	
		연장 1㎞초과 2㎞이하	39만2천원	
		연장 2㎞초과 3㎞이하	57만1천원	
		연장 3㎞초과 4㎞이하	75만3천원	
		연장 4㎞초과 5㎞이하	93만7천원	
		연장 5㎞초과	93만7천원에 5㎞를 초과한 매 1㎞마다 6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판매시설			13만9천원	-
고압가스수입업시설			13만9천원	10만4천원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액화가스	저장능력 100㎏이하	3만4천원	2만9천원
		저장능력 100㎏초과 300㎏이하	3만7천원	3만2천원
		저장능력 300㎏초과 500㎏이하	5만4천원	4만2천원
		저장능력 500㎏초과	5만4천원에 500㎏을 초과한 10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5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4만2천원에 500㎏을 초과한 10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3만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압축가스	저장능력 300㎥이하	3만4천원	2만9천원
		저장능력 300㎥초과 500㎥이하	3만7천원	3만2천원
		저장능력 500㎥초과 1천㎥이하	5만4천원	4만원
		저장능력 1천㎥초과	5만4천원에 1천㎥를 초과한 10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5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4만원에 1천㎥를 초과한 10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3만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용 기 제 조 시 설			50만6천원	-
냉 동 기 제 조 시 설			50만6천원	-
특 정 설 비 제 조 시 설			50만6천원	-

2. 중간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액화가스의 제조(충전·저장)시설	5톤이하	10만6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4만2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6만4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23만원
	50톤초과 100톤이하	32만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54만6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76만8천원
	1천톤초과	76만8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3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압축가스의 제조(충전·저장)시설	1천㎥이하	12만5천원
	1천㎥초과 2천㎥이하	19만3천원
	2천㎥초과 3천㎥이하	22만3천원
	3천㎥초과 5천㎥이하	27만5천원
	5천㎥초과 1만㎥이하	45만5천원
	1만㎥초과 10만㎥이하	73만9천원
	10만㎥초과 20만㎥이하	101만5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127만6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172만3천원
	100만㎥초과	172만3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8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3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또는 냉동능력	
냉동제조 시 설	5톤이하	3만1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5만1천원
	10톤초과 30톤이하	10만2천원
	30톤초과 50톤이하	14만3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22만원
	100톤초과 200톤이하	30만6천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40만2천원
	300톤초과 500톤이하	55만4천원
	500톤초과	55만4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8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9만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배 관	연장 1㎞이하	14만4천원
	연장 1㎞초과 2㎞이하	22만8천원
	연장 2㎞초과 3㎞이하	32만5천원
	연장 3㎞초과 4㎞이하	40만9천원
	연장 4㎞초과 5㎞이하	50만4천원
	연장 5㎞초과	50만4천원에 5㎞를 초과한 매 1㎞마다 3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판매시설	판매소마다	7만6천원
고압가스 수입업시설	수입업시설마다	7만6천원

3.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 설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이음매없는 용 기	5ℓ미만	710원	670원
	5ℓ이상 95ℓ미만	1천510원	2천740원
액화석유 가스용기	10㎏미만	710원	740원
	10㎏이상 20㎏미만	850원	1천210원
	20㎏이상 50㎏미만	950원	1천540원
	50㎏이상 100㎏미만	1천660원	1천920원
	복합재료용기	2천40원	3천150원
아세틸렌 용 기	5㎏미만	1천550원	1천660원
	5㎏이상 10㎏미만	1천920원	2천100원
초저온용기	50㎏미만	1만2천원	1만3천340원
	50㎏이상 70㎏미만	1만4천900원	1만5천670원
	70㎏이상 150㎏미만	2만800원	2만2천660원
	150㎏이상 240㎏미만	2만6천500원	3만2천930원
	240㎏이상 1천㎏미만	3만9천원	4만2천250원
	1천㎏이상 2천㎏미만	8만1천300원	5만8천700원

대 상			금 액	
용 기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초저온용기	2천kg이상		8만1천300원에 2천kg을 초과한 1천kg마다 1만9천1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77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5만8천700원에 2천kg을 초과한 1천kg마다 1만9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78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붙임용기 및접합용기	615mL미만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이하	1조마다 2만3천300원	-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초과 1만개 이하	1조마다 4만200원	-
	615mL이상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이하	1조마다 2만8천600원	-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초과 1만개 이하	1조마다 5만800원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1조를 형성 하는수 1천개이하		1조마다 2만6천500원	-
	1조를 형성 하는수 1천개초과 2천개이하		1조마다 4만5천500원	-
	1조를 형성 하는 수 2천개초과 3천개이하		1조마다 7만1천원	-
재 충 전 금지용기	20kg(L)미만		880원	-
	20kg(L)이상 40kg(L)미만		1천10원	-
알루미늄합금라이너 및 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	5ℓ미만		2천860원	3천70원
	5ℓ이상 80ℓ미만		5천300원	6천140원
	80ℓ이상		1만2천180원	1만3천660원

대 상		금 액	
용 기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그밖의용기	10㎏(L)미만	590원	740원
	10㎏(L)이상 20㎏(L)미만	930원	1천250원
	20㎏(L)이상 40㎏(L)미만	1천60원	1천640원
	40㎏(L)이상 50㎏(L)미만	1천590원	2천80원
	50㎏(L)이상 70㎏(L)미만	2천70원	2천320원
	70㎏(L)이상 150㎏(L)미만	2천700원	2천850원
	150㎏(L)이상 240㎏(L)미만	1만7천780원	3만1천460원
	240㎏(L)이상 1천㎏(L)미만	2만5천370원	4만850원
	1천㎏(L)이상 2천㎏(L)미만	7만3천900원	5만5천900원
	2천㎏(L)이상	7만3천900원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2만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1만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5만5천900원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2만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3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용 기 부 속 품		170원	200원

4.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저장탱크 및 차량에고정된 탱크 (ISO탱크컨테이너)	내용적1천ℓ이하	4만1천300원	2만9천700원
	내용적1천ℓ초과 5천ℓ이하	7만8천400원	4만8천700원
	내용적5천ℓ초과 1만ℓ이하	13만7천700원	8만6천800원
	내용적1만ℓ초과 2만ℓ이하	26만500원	18만7천400원
	내용적2만ℓ초과 5만ℓ이하	39만1천800원	27만1천100원
	내용적5만ℓ초과	39만1천800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9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70만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27만1천100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5만8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59만8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압 력 용 기	내용적1천ℓ이하	4만1천300원	2만9천700원
	내용적1천ℓ초과 5천ℓ이하	7만8천400원	4만8천700원
	내용적5천ℓ초과 1만ℓ이하	13만7천700원	8만6천800원
	내용적1만ℓ초과 2만ℓ이하	26만500원	18만7천400원
	내용적2만ℓ초과 5만ℓ이하	39만1천800원	27만1천100원
	내용적5만ℓ초과	39만1천800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9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70만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27만1천100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5만8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0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기 화 장 치	기화능력 30㎏/h이하	1만1천200원	8천800원
	기화능력 30㎏/h초과 50㎏/h이하	1만4천900원	1만2천300원
	기화능력 50㎏/h초과 200㎏/h이하	1만6천400원	1만4천800원
	기화능력 200㎏/h초과 500㎏/h이하	1만9천900원	1만7천300원
	기화능력 500㎏/h초과	1만9천900원에 500㎏/h 를 초과한 1천㎏/h마다 1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68만4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1만7천300원에 500㎏/h 를 초과한 1천㎏/h마다 7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15만4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 전 밸 브	호칭지름 8A이하	500원	310원
	호칭지름 8A초과 15A이하	1천180원	780원
	호칭지름 15A초과 25A이하	1천860원	1천280원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3천30원	2천210원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4천610원	3천570원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7천130원	5천580원
	호칭지름 100A초과 200A이하	1만1천100원	8천800원
	호칭지름 200A초과	1만1천100원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2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8천800원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2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22만7천700원	22만7천700원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긴 급 차 단 장 치	호칭지름 25A이하	6천880원	4천770원
	호칭지름 25A초과 50A이하	7천230원	5천30원
	호칭지름 50A초과 80A이하	8천610원	6천230원
	호칭지름 80A초과	8천610원에 80A를 초과한 25A마다 1천95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만9천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천230원에 80A를 초과한 25A마다 1천59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만4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독 성 가 스 배관용밸브	호칭지름 25A이하	970원	970원
	호칭지름 25A초과 50A이하	1천120원	1천120원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1천860원	1천860원
	호칭지름 100A초과	5천원	5천원
자 동 차 용 가 스 자 동 주 입 기	암카플러(노즐)	930원	930원
	숫카플러(리셉터클)	140원	140원
역 화 방 지 장 치		490원	490원
자동차용압축가스 완속충전설비		18만7천400원	18만7천400원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 수 장 치		16만8천400원	16만8천400원
반 도 체 제 조 용 극 자 외 선 노 광 장 비		2천7백만원	-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41만원	-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냉동설비	압축기	냉동능력 5톤미만	2만2천300원	2만2천300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5천100원	2만5천100원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7천500원	2만7천500원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3만1천500원	3만1천500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9천600원	4만9천600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7만원	7만원
	응축기	냉동능력 5톤미만	2만3천원	2만3천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5천100원	2만5천100원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7천500원	2만7천500원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3만1천500원	3만1천500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9천600원	4만9천600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7만원	7만원
	증발기	냉동능력 5톤미만	2만3천원	2만3천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5천100원	2만5천100원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7천500원	2만7천500원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3만1천500원	3만1천500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9천600원	4만9천600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7만원	7만원
	압 력 용기류	내용적 50ℓ미만	7천800원	7천800원
		내용적 50ℓ이상 100ℓ미만	1만7천600원	1만7천600원
		내용적 100ℓ이상 200ℓ미만	2만6천600원	2만6천600원
		내용적 200ℓ이상 1천ℓ미만	2만8천900원	2만8천900원
		내용적 1천ℓ이상	2만8천900원에 1천ℓ를 초과한 1천ℓ마다 1만9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9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2만8천900원에 1천ℓ를 초과한 1천ℓ마다 1만9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9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설계검토			14만8천300원	14만8천300원
냉동용특정설비설계강도시험			32만9천300원	32만9천300원

5. 냉동기 생산단계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		17만4천700원
그밖의 냉동기	냉동능력 5톤미만	1만2천900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1만5천400원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1만9천원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3만5천400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5만3천200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7만3천200원

6.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설계단계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신 규	변 경
용기		234만6천원	118만8천원
용기부속품		35만3천원	35만3천원
특정설비	독성가스배관용밸브	53만5천원	53만5천원
	자동차용압축가스완속충전설비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주입기	70만2천원	70만2천원
	압축수소가스용복합재료압력용기	234만6천원	129만4천원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140만원	140만원
냉동기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	104만2천원	104만2천원

7.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신 규	변 경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42만5천원	32만6천원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29만1천원	22만5천원
고압가스충전시설	29만1천원	22만5천원
냉동제조시설	20만3천원	16만9천원
고압가스저장시설	10만1천원	7만9천원
판매시설	6만6천원	5만1천원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시설	22만8천원	17만5천원

8.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수수료

대 상		금 액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석유정제시설	129만3천원
	석유화학공업시설	148만7천원
	비료생산시설	86만6천원
비고 : 대상시설 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86만6천원으로 한다.		

9.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신 규	변 경
석유정제시설	102만8천원	72만원
석유화학공업시설	102만8천원	72만원
비료생산시설	74만6천원	52만2천원

10. 정밀안전검진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정밀안전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을 적용한다.

11.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대 상	금액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76만2천원에 한 종류를 추가할 때마다 20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101만7천원

12.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가. 전문교육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2)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신규	23만1천900원
		보수	15만6천700원
	(3)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4)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신규	23만1천900원
		보수	15만6천700원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가. 전문교육	(5)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6)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신규	23만1천900원
		보수	15만6천700원
	(7)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8)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9)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10)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신규	23만1천900원
		보수	15만6천700원
	(1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6만1천400원
		보수	2만8천600원
	(1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독성가스)	신규	14만7천200원
		보수	14만7천200원
	(13) 운반책임자	신규	13만300원
		보수	2만8천600원
	(14) 사용시설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신규	6만1천400원
	(15)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7만9천원
		보수	2만7천500원
나. 특별교육	(1) 운반차량운전자		2만3천300원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2만2천200원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4천400원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2만4천400원
	(5) 공기충전시설안전관리책임자		3만4천900원
	(6)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		3만4천900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가목의 교육대상 중 “검사기관기술인력”은 보수과정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 한다.			

13.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수수료 : 1만4천원

14. 검사기관의 시설확인 수수료 : 37만6천원